

#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 제도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어디까지 보상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급여 진료비)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항목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는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일부 보상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b>지급항목</b>	본인일부부담금 (상급병실 제외 전액 지급)	법령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만을 지급 (MRI, 치아보철2회, 무통주사 등)

자세한 내용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http://kn.ssif.or.kr>) 자료실 > 법령자료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이렇게 청구해보세요!



접속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에 접속



로그인

학부모 시스템 로그인  
모바일인증 (회원가입 절차 없음)



청구서 작성

공제급여청구 > 청구서작성  
(성명, 생년월일 입력)



오프라인 제출

출력 후 구비서류 우편제출



온라인 제출

구비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학교안전법 일부개정에 따른 구비서류 변경 안내

필수서류

공제급여청구서

- 청구인(부모또는 법정대리인) 서명(날인)
- 청구인 : 보호자
- 공제가입자 : 학교장
- 피공제자 : 사고학생
- 청구액 : 소요된 치료비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카드전표, 간이영수증은 처리불가

의사의 증명서

- 진단서, 치료확인서, 소견서 등  
(병명이 기재되어 있어야함)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인과 학생(피공제자)간 관계 확인용  
청구금액 50만원 초과시

진료비 세부내역서

- 비급여치료비 및 본인부담금이 있을시 제출

추가서류

청구인통장사본

- 공제급여 결정액 입금 시 계좌 확인용

#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

항 목	인정범위	비 고
상급 병실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신화상을 입은 자</li> <li>● 세균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가 필요한 자</li> <li>● 심한 정신질환자</li> </ul>	<p>의사소견서 제출 병원 사정에 의한 상급 병실 이용 인정 안됨</p>
성형 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창(열상)으로 인한 흉터 또는 변형 제거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1회 이내</li> <li>● 화상으로 신체기능장애 및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화상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 각 2회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상흉터: 10만원/cm</li> <li>- 면상흉터: 20만원/cm<sup>2</sup></li> <li>- 조직함몰: 20만원/cm<sup>2</sup></li> </ul> </li> <li>● 레이저 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cm<sup>2</sup> 미만: 153,540/회</li> <li>- 25cm<sup>2</sup> 이상 100cm<sup>2</sup> 미만: 255,900원/회</li> <li>- 100cm<sup>2</sup> 이상: 358,260원/회</li> </ul> </li> </ul>	<p>의사소견서 제출</p>
영상진단료 (MRI, 초음파, 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상부위 1회</li> </ul>	<p>의사소견서 제출</p>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제회에서 요구한 경우</li> </ul>	<p>각 1부 비용 지급</p>
비급여 주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통주사료: 1회(영양제, 비타민제 제외)</li> </ul>	
치아보철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철료: 50만원 이하(2회)</li> <li>● POST(기둥) 및 임시레진: 15만원 이하(1회)</li> <li>● 고정치료비: 50만원(1회) (심미정 교정비는 비인정)</li> </ul>	<p>의사소견서 제출</p>
의료보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준함</li> </ul>	<p>의사소견서 제출</p>
응급수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구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요금(10km 이내): 20,000원</li> <li>- 10km초과시: km당 800원 추가</li> </ul> </li> <li>● 특수구급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요금(10km 이내): 50,000원</li> <li>- 10km초과시: km당 1,000원 추가</li> </ul> </li> </ul> <p>(응급상황 아닌 단순 교통수단으로 사용시 비인정)</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별표1)의 응급증상인 경우 (사고당일)</p>
국외치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진료비 기준</li> </ul>	

# 비인정하는 비급여 진료비 예시

1. 상급병실료	3인실 이하의 병실료(건강보험 적용여부와 무관)
2. 식대	환자 1식 초과분, 보호자 식대
3. 주사료	성장호르몬, 인대강화주사,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연골배양주사, 영양제, 비타민제, 스테로이드제, 콜라겐(젠타큐, 리젠실), 재생주사(레보코, PDRN), 동종진피 등
4. 처치 및 수술료	DBM, 유착방지제(가딕스 등), 마취흡입제, 1회용 수술포 등
5. 검사료	간염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체열검사, 코로나검사, 독감검사 등
6. 재료대	목발·슈즈·팔걸이 1회 초과분, 방수캐스트, 히트워머, (열상으로 인한)흉터연고 1회 초과분, 재깍스 등
7. 물리치료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이온삼투요법, 냉각치료 등
8. 영상진단료 (MRI, CT, 초음파)	1회 초과분, 부상부위 이외 ※ 수술 중 마취초음파의 경우 100,000원 한도 내 지급
9. 진단서대	1부 초과시, 상해진단서, 향후추정서 발급비
10. 레이저	1회 초과분
11. 보장구(보조기)	- 팔, 다리, 척추, 골반부위 이외 - 기존 착용하던 안경 또는 치아교정기 파손비
12. 영수차액	할인액, 미납액, 중복청구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13. 응급이송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응급증상의 경우가 아닌 경우
14. 기타	사물함관리비, 히트워머, 수저 및 CD구입비, 간이영수증, 보호대, 환자복 등 소모품비